

의안번호	제384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8월 28일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4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8일

발의자 : 안지윤,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치영, 조성태,
김종필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도내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의 요청을 검토해 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수정함 (안 제4조)
-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안 제6조)
 -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제17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설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 전문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 호
- 다. 협의 :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충청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 대비·대응계획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시행 및 지역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3장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에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 부서장

2. 도 소방본부의 구급 업무 담당 부서장

3.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안전에 대한 사전협의 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제11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2.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3.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5.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6.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
8. 응급의료 서비스 질(質) 및 통계 관리
9. 응급의료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10. 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11.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제1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 보건정책과장과 외부전문가 1명을 공동 지원단장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

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응급의료 지원사업 등

제18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부품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지정
2.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3.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표지 설치
4.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제19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람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장소와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기관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병원 전 응급의료 전문화 사업)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재이송률을 낮추고 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전(前) 응급의료 전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를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협의체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의료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재정 지원) 지역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医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에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 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④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시·도위원회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2015. 1. 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8. 3.>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말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충북 '응급의료 지원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

3. 관련 조문

- (제4장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16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며,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까지 5년으로 함
-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은 민간위탁 사무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함
- ※ '23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기준, 작성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인건비	1,045,560	209,112	209,112	209,112	209,112	209,112
사업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운영비	204,440	40,888	40,888	40,888	40,888	40,888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및 자체재원 매칭사업으로 추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고영대 ☎043-220-31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국 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인건비	209,112	209,112	209,112	209,112	209,112	1,045,560
	사업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운영비	40,888	40,888	40,888	40,888	40,888	204,44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보조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참고

응급의료지원단 소요예산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300,000	◦ 12개월분 소요예산 기준 산출	
인건비	229,820 (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겸직) : 월 1,040천원 × 12월 × 1명 12,480 ◦ 팀 장 : 월 3,937천원 × 12월 × 1명 69,612 (책임연구원) ◦ 주임연구원 : 월 3,592천원 × 12월 × 1명 63,192 ◦ 일반연구원 : 월 2,377천원 × 12월 × 1명 42,652 ◦ 행정요원 : 월 2,329천원 × 12월 × 1명 41,884 	
사업비	34,180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비 19,180 ◦ 응급의료 교육·훈련 5,000 ◦ 자문수당, 회의비, 여비 5,000 ◦ 홍보비 5,000 	
운영비	36,000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25,000 - 사무실, 회의실, 전산장비 ◦ 업무추진비(기관방문 등) 6,000 ◦ 일반운영비 5,000 	

※ 인건비 : 국립중앙의료원 봉급표 및 타 시·도 지원단 인건비 편성 참고

* 단장(전문의취득후 10년경과 후 응급의료기관 종사 경력 5년 이상인자, 또는 부교수 이상), 책임연구원(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박사급 이상), 주임연구원(석사급 이상), 일반연구원·행정(학사급 이상)